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56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달희

이헌승 · 김종양 · 이인선

고동진 • 한지아 • 박충권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리무역·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국가관리무역·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 관으로, 지방관리무역·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시·도지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항만을 국가관리무역·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연안항으로 구분하고 그 개발 및 관리 권한도 각각 국가와 시·도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1년 1월 시행) 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여전히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와 같은 행정은 지방일괄 이양법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음.

이에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등).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 로 한다.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5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시행자) ① <u>관리청</u>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	② 관리청
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	
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	
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	
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	
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	
다.	.
③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사업시행	③ <u>관리청</u>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④ <u>관리청</u>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	
정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생략)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 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
시계획의 승인 등) ①
관리
<u>청</u>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리청</u>
④ <u>관리청</u>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고시하고, 관할 시 ·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 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 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6)·(7) (생 략)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 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 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 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 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 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 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 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⑤ 관리청	-
	-
	-
	-
	-
	-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u> </u>
	_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_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u> </u>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u>청</u>	<u> </u>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u>청</u>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u>청</u>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u>청</u>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u>청</u>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u>관리</u> <u>청</u>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1. ~ 4. (생략)
- ② (생략)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 경하려면 <u>해양수산부장관</u>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위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

관리청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리청</u>
④ 관리청
⑤ (현행과 같음)
6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u>해양수산부장관</u>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⑧・⑨ (생략)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

- ① (생 략)
- 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 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공

관리
<u>청</u>
⑦ 관리청
1. ~ 3. (현행과 같음)
® ⋅ ⑨ (현행과 같음)
]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 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 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8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관리청
③ (현행과 같	-음)
제58조(준공확인	
100=(0 1 0	./ 🖭
	 ਹL⊐ੀ
الم لح	 <u>관리</u>
 <u>청에</u>	<u>관리</u>
<u>청에</u>	
	<u>관리</u>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 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 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 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관리청
④ (현행과 같음)
⑤
<u>관</u>
<u>리청에</u>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	⑥ 관리청
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u>해양수</u>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u>관리청</u> -
<u>산부장관</u> 은 제58조제2항에 따	
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	
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사업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	
문에 따라 <u>국가</u> 가 취득한 토지	<u>국가 또는 시·도지사</u>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국가</u> 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u>국가 또는 시·도지사</u>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① <u>관리청</u>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	
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	
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 성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 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 여야 한다.
 - ② <u>해양수산부장관</u>이 관리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 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1
<u>관리청</u>		
② 관리청		
<u> </u>		
1. ~ 3. (현행과 같음)		
③		
	- 관	라리
청에		
관리청		
· <u>੫੧ </u> 0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	만
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	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
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생략)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 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u>국가</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 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관리청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
획의 수립) ①
<u>관리청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u>국가</u>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 ④ (현행과 같음)